

第 17 回 鷄 龍 市 議 會

第 1 次 定 例 會

2005. 7. 5(火)

檢 討 報 告 書

- ① 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②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③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— 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—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2005. 4.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(2004. 12. 20, 조례 제130호)를 市의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主要内容

-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지정(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 -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하천방재담당”을 “복구지원담당”으로 개정코자 함.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위원장 및 간사지정(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)
 -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하천방재담당”을 “복구지원담당”으로 개정코자 함.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2005. 4.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「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市의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—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—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2005. 4.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(2004. 12. 20, 조례 제130호)를 市의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主要内容

-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지정(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 -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하천방재담당”을 “복구지원담당”으로 개정코자 함.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위원장 및 간사지정(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)
 -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하천방재담당”을 “복구지원담당”으로 개정코자 함.

□ 檢討意見

- 2005. 4.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「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를 市의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2005. 4.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 조례(2004. 12. 20, 조례 제128호)를 市の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主要内容

- 안전관리자문단 간사 및 서기(안 제12조)
 - －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하천방재담당”을 “재난관리담당”으로 개정코자 함.

□ 檢討意見

- 2005. 4.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「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市の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